

양산사송 A-4BL 국민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동호지정 · 선계약후검증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0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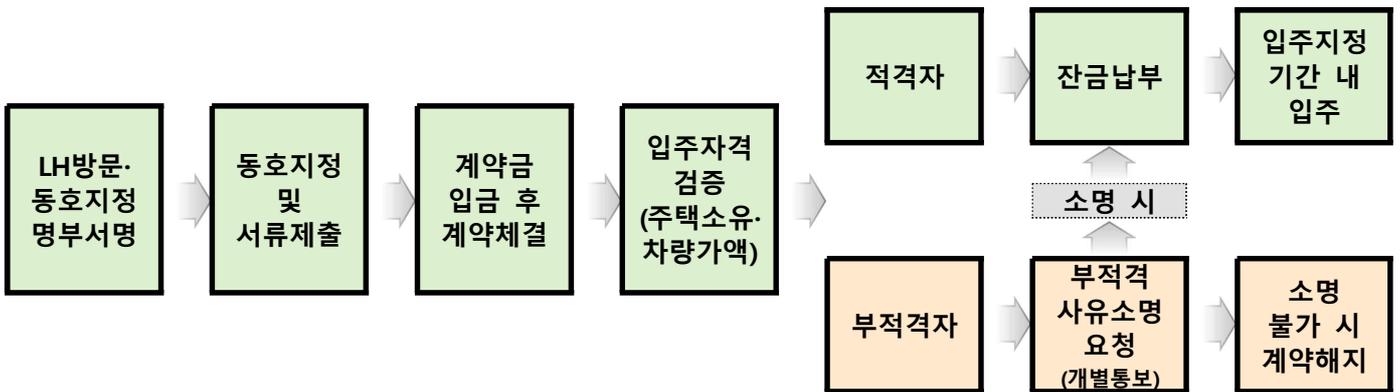
- ※ 금회 공고는 최초 및 추가모집 공고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하여 신청자가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개별안내)
- ※ 금회 공고하는 추가입주자 모집은 **공급형별로 동호지정 및 계약 일정을 달리하여 진행**하므로 이를 숙지하시어, **해당 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순위로 간주하므로, 방문일정 수립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간혹 잘못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5.08.(목)**이며,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동차가액)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5.05.08.)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당일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요약】



- 청약신청자에게 정확한 주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해 샘플하우스 열람 기간을 운영합니다.

※ 샘플하우스 운영기간 ※	금회 열람가능 주택형
2025.05.19.(월) ~ 2025.05.23.(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9A, 37A, 46A * 주거약자용 주택 및 49A 열람 불가

- ※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샘플하우스 열람이 가능합니다.
- ※ 단,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동시간대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기간 이후 샘플하우스 열람은 불가합니다.

1 신청절차 관련 주요사항

- 금회 모집은 잔여호수에 대해 방문접수 순서대로 동호지정 후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입주자격검증을 거쳐 입주자를 최종 확정하는 선계약후검증 동호지정 공고입니다.
- 금회 모집은 '25.05.28.(수)~'25.05.29.(목) 양일간 공급형별로 동호지정 및 계약 일정을 달리하여 진행하므로, 공급 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라며 해당 일자 외 청약신청은 불가합니다.
- 청약희망자는 공급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해당 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라며, **공급형별 공급가능한 물량 소진 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① '25.05.28.(수)	② '25.05.29.(목)
접수일자별 신청가능한 공급형별	일반형 주택 29A, 37A, 37B, 46A, 49A	주거약자용 주택 29A-1(주거약자용), 37A-1(주거약자용)

- ① 신청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 도착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추첨 순번대로 동호지정 후 계약을 체결하며, ② 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경우 10시 이전 접수된 자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미계약 세대에 대해 **접수대장 서명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 * 오전 10시 동호지정 개시, 16시 이후 접수 불가
 - ** 계약장소인 LH경남지역본부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9A-1, 37A-1)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25.05.29.(목) 10시 전 도착자 : 동호지정 명부작성 시 주거약자 여부 확인(※ 주거약자 해당여부는 p.7 참고) 하며, 주거약자 해당 시 일반공급대상자보다 선순위 부여(**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예정자에 한함**)
 - '25.05.29.(목) 10시 이후 도착자 : 접수대장 서명 순서대로 동호지정 순번 부여하나, 동시 도착 시 주거약자에게 우선권 부여(**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예정자에 한함**)
- 동호지정 당일 공사 지정시간(16시) 내에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당일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분양권 등 소유 여부, 자동차가액)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소명기간 내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하고 부적격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 시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가 입주자격 통지 후 단순 변심에 의해 입주 전 계약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희망자는 동호지정 당일 16시까지 공사에서 부여하는 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입금 및 계약 미체결 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합니다.(현장수납 불가)
-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았으나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동호지정 명부에 새로 서명하여 순번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대기자는 지체없이 계약할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미계약호수가 남아 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계약체결일 기준 약 5주 소요 예정)

② 입주자격완화 및 재계약 관련

- 금회 공고는 아래와 같이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격 완화 내용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배제
------------	----------------

※ 재계약 기준 및 임대조건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국민임대주택의 표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배제 공고에 따른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임대조건 미할증, 무주택 및 자동차가액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재계약 가능),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국민임대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최초 입주 시 소득 및 총자산가액은 검증 제외하나, 재계약 시 모든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최초 입주 시 소득 및 총자산가액은 검증 제외하나, 재계약 시 모든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진행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1. 건설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로 169, 양산사송 A-4BL 국민임대주택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건설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²)					금회 공급호수		해당 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일반공급	주거약자			
				기타공용	주차장						
29A	321	29.21	15.3124	3.4055	21.1146	69.0425	136	-	401,403~405 407~413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5.7월 예정
29A-1	42	29.21	15.3124	3.4055	21.1146	69.0425	-	33	401,403,404,405		
37A	318	37.66	19.7421	4.3907	27.2227	89.0155	47	-	401~403,405~407 411,413,415		
37A-1	17	37.66	19.7421	4.3907	27.2227	89.0155	-	4	401,403,405		
37B	32	37.38	19.5953	4.3581	27.0203	88.3537	10	-	415		
46A	366	46.62	24.4391	5.4354	33.6995	110.194	12	-	401,403,405~407 410,411,415		
49A	60	49.48	25.9383	5.7688	35.7669	116.954	1	-	411,412,414		
합계							206	37			

- 금회 공급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 동호는 신청접수 현장(LH경남지역본부)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9A-1, 37A-1)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고령자, 장애인 등)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 해당여부는 p.7 참고)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가능시기는 계약체결일 기준 약 5주 이후로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단위 : 원)

공급 형별	기본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29A/A-1	10,106,000	510,000	9,596,000	169,470	(+) 17,000,000	27,106,000	70,300
					(-) 5,000,000	5,106,000	184,050
37A/A-1	17,958,000	900,000	17,058,000	224,400	(+) 22,000,000	39,958,000	96,060
					(-) 11,000,000	6,958,000	256,480
37B	17,825,000	900,000	16,925,000	223,280	(+) 22,000,000	39,825,000	94,940
					(-) 11,000,000	6,825,000	255,360
46A	27,878,000	1,400,000	26,478,000	291,430	(+) 29,000,000	56,878,000	122,260
					(-) 19,000,000	8,878,000	346,840
49A	30,401,000	1,600,000	28,801,000	305,400	(+) 30,000,000	60,401,000	130,400
					(-) 21,000,000	9,401,000	366,650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예정일 기준이나, 신청자 본인의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시 잔금 및 전환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해당 임대조건으로 수정 계약이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동차 가액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p>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p> <p>*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p>
------------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 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정하여 1명이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세대로 구성될 2인이 각각 신청하였을 경우 중복신청으로 신청 무효됨.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하여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양산사송 A-4BL 주거약자용 주택 설치품목은 팸플릿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소득 · 총자산요건은 최초 계약 시 미적용)**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기본조건		금회 모집공고 시 완료된 월평균소득기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1인가구	90%	3,238,348원 이하	금회 적용 배제	
	2인가구	80%	4,381,602원 이하		
	3인가구	70%	5,338,881원 이하		
	4인가구		6,004,662원 이하		
	5인가구		6,321,734원 이하		
	6인가구		6,813,160원 이하		
자 산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금회 적용 배제)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출산자녀 수	총자산가액(금회 적용 배제)	자동차가액
0명(기준)	33,700만원	3,803만원
1명	37,100만원	4,183만원
2명	40,500만원	4,563만원

※ (필독) 소득·총자산요건 완화 대상자 재계약 기준 ※

1회차 재계약 시부터 소득 및 총자산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 검증하며, 완화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 및 총자산 요건 완화모집 입주자의 경우 1회차 재계약 시 소득·총자산 기준 미충족하더라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 정상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득 및 총자산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재계약 가능)

■ 소득·자산 산정방법 (금회 모집공고 시 배제되는 소득 및 총자산가액 검증 제외, 1회차 재계약 시부터 적용)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确定为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p>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 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p style="text-align: center;">금융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사기준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p>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소요 기간	절 차	장 소	일정 등 상세내용
사전 준비	주택열람 ↓	해당 단지 내 주택형별 지정된 동호 ※ 샘플하우스 외 열람불가 (관리사무소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사무소를 경유하여 주택열람 주택열람 일시 (주말·점심시간 열람 불가) 05.19.(월) ~ 05.23.(금) 오전10시~오후5시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제출서류 준비 ↓	각 서류별 발급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세한 구비서류는 (6. 제출서류)참고 ※ 제출서류 미비 시 계약 불가
계 약 당 일	명부 서명 및 동호지정(선택) ↓	NH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15) [1층] 주택홍보관 '25.05.28.(수)~'25.05.29.(목) [10: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형별 지정된 날짜에 방문 동호지정 참여 명부 서명한 자에 한하여 동호지정 순번 부여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계약을 희망하는 동호 지정(공가세대 동호판 참고) ※ 순번을 호명받았으나,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차례를 놓친 경우 마지막 순번으로 동호지정
	서류제출 및 계약금 입금 ↓	서류제출 후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계약금 입금 (현장수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서류 미비 시 계약 불가 안내받은 계좌번호에 계약금 입금 ※ 계약금 미납 시 계약불가
	계약체결 ↓	NH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15) [1층] 주택홍보관 '25.05.28.(수)~'25.05.29.(목) [10: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 입금사실 확인 및 제출 서류 완비 시 계약체결 가능 ※ 동호지정 당일만 입금 및 계약체결 가능 (동호지정 당일 이후 권리 상실)
약 5주 (예정)	자격 검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입주자격 적격여부 확인 (무주택, 자동차가액 기준 충족 여부)
	부적격자 소명 ↓	우편 안내 (부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 소명 ※ 소명 불가 시 입주 불가능(계약 해지)
	잔금납부 및 입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입주안내 예정 입주지정기간 부여(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

■ **선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체결자를 대상으로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 여부, 자산(자동차)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취소 되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청약희망자는 공급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해당 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라며, **공급형별 공급가능한 물량 소진 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① '25.05.28.(수)	② '25.05.29.(목)
접수일자별 신청가능한 공급형별	일반형 주택 29A, 37A, 37B, 46A, 49A	주거약자용 주택 29A-1(주거약자용), 37A-1(주거약자용)

■ **동호지정 순서**

① 신청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 도착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추첨 순번대로 동호지정 후 계약을 체결하며, ② 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경우 10시 이전 접수된 자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미계약 세대에 대해 **접수대장 서명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 오전 10시 동호지정 개시, 16시 이후 접수 불가

** 계약장소인 LH경남지역본부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9A-1, 37A-1)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25.05.29.(목) 10시 전 도착자 : 동호지정 명부작성 시 주거약자 여부 확인(※ 주거약자 해당여부는 p.7 참고)하며, 주거약자 해당 시 일반공급대상자보다 선순위 부여
 - '25.05.29.(목) 10시 이후 도착자 : 접수대장 서명 순서대로 동호지정 순번 부여하나, 동시 도착 시 주거약자에게 우선권 부여

신청일	공급형별	순번 부여 방법	
① '25.05.28.(수)	29A, 37A, 37B, 46A, 49A	10:00 이전 도착	10:00~16:00 도착
		순번 추첨	접수대장 서명 순번
② '25.05.29.(목)	29A-1(주거약자용), 37A-1(주거약자용)	10:00 이전 도착	10:00~16:00 도착
		순번 추첨	접수대장 서명 순번
		(1) 주거약자 해당여부 확인 (2) 주거약자 해당자 순번 추첨 (동호지정 우선권 부여) (3) 일반공급 대상자 순번추첨	접수대장 서명 순번 (단, 동시 도착한 경우 주거약자에게 우선권 부여)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순번 호명 시 자리가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접수대장에 다시 서명·등록하여 순번을 새로이 부여받아야 합니다.

- 방문 고객 수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자동 신청 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
- 계약금 현장수납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 시간은 당일 10:00~16:00까지이며, 16:00 후에는 동호지정 접수명부 서명 불가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해지합니다.
- 동호지정 계약 체결 후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는 계약취소 후(해약신청 필요)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금 반환됩니다. 단, 입주자격 적격 통지를 받은 계약자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반환 시 이자 없음)**

5. 공급일정

구분	접수방법 및 일정		비고
동호지정 및 계약	① '25.05.28.(수) [10:00 ~ 16:00]	② '25.05.29.(목) [10:00 ~ 16:00]	지정시간(16시) 내에 계약금 미입금 시 동호지정 무효 및 권리상실
	29A, 37A, 37B, 46A, 49A	29A-1(주거약자용), 37A-1(주거약자용)	
	※ 장소 : LH경남지역본부 1층 주택홍보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입주자격 적격여부 최종통지 및 입주 안내	자격검증 후 개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는 해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약금 공제없이 계약금 반환 • 단, 입주적격자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 위약금 공제 후 반환 		개별통지
입주	개별통보(계약체결일 기준 약 5주 이후) * 입주지정기간 추후 통지(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		

- 금회 모집은 '25.05.28.(수)~'25.05.29.(목) 양일간 공급형별로 동호지정 및 계약 일정을 달리하여 진행하므로, 공급 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람에 해당 일자 외 청약신청은 불가합니다.
* 오전 10시 동호지정 개시, 16시 이후 접수 불가
- 청약희망자는 공급일정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해당 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람에, **공급형별 공급 가능한 물량 소진 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5.05.28.(수) 현장접수 첫날 방문객이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접수장소인 LH경남지역본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5.05.0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붙임)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p><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신청 희망자 	1통
	기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통

■ 방문 시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방문·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방문·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방문·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7. 계약안내

- 금회 계약은 현장계약으로만 운영하며, 동호지정 당일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지정시간 내(10:00~16:00)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자동 신청 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현장수납 불가)
-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안내 등은 입주자격 검증 후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해드리니, 계약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재계약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재계약 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재계약 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 (완화입주자) 최초 재계약 시부터 소득·총자산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하며, 완화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모집 입주자의 경우 1회차 재계약 시 소득·총자산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 정상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득·총자산 기준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재계약 가능)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취소되며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입주불가)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를 따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할 경우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p>당첨자 선정 및 계약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적격자로 통지받았으나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샘플하우스 운영 기간 내 단지구조 및 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지구 및 단지 여건</p>	<p>[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전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셔야 하며, 인근 도로 개설 계획·일정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문의·확인하셔야 합니다. • 양산사송 A-4BL 국민임대주택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실시계획승인서 등)는 'LH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주택건설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 시 제반여건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구여건]

- 단지와 인접하여 경부고속도로 및 지방도1077호(노포사송로)가 위치합니다.
- 양산사송 지구 내 '유1,3 / 초1,2 / 중1 / 초·중1 / 고1' 교육시설 용지가 있으며 유1, 초1, 중1, 유3, 초·중1은 개교 상태, 고1('26.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여건]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및 BI'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녹지조성(법면발생, 식재 등), 출입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3~20층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외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주현관,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411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되었으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상파TV 방송수신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단, 무궁화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유료)은 수신 가능)
- 단지 주출입구에는 입출 차량 자동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 세대에는 욕실에 비상통화장치가 1개소 설치되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해당 동 또는 인접 동 주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설치 위치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소-1 (401동 주변 지하주차장 설치 : 401, 403동)
 - 무인택배보관소-2 (415동 주변 지하주차장 설치 : 415동)
 - 무인택배보관소-3 (402동 주변 지하주차장 설치 : 402동)
 - 무인택배보관소-4 (404동 주변 지하주차장 설치 : 404, 405, 406, 414동)
 - 무인택배보관소-5 (407동 주변 지하주차장 설치 : 407동)
 - 무인택배보관소-6 (409동 주변 지하주차장 설치 : 413동)
 - 무인택배보관소-7 (410동 주변 지하주차장 설치 : 408, 409동)
 - 무인택배보관소-8 (410동 주변 지하주차장 설치 : 410, 411, 412동)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아파트 지붕층(일부)에는 이동통신 사업자 등의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치시기 등은 통신사업자의 여건에 의합니다.
- 옥외 쓰레기보관소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에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동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설치위치에 따라 일부세대에 조망권, 소음 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산책로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배치 등을 필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생울타리, 금속재 담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01동, 403동, 405동, 407동, 411동 및 415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열교환실 설치위치 : 2개소 404동, 409동 지하 인근, 펌프실 설치위치 : 1개소 404동 지하 인근]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설치위치 : 지하주차장, 주민운동시설2 인근]
- 전기차 충전설비는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개소, 완속충전기 34대가 설치되었습니다.
-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아파트 내 비상발전기를 활용(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가 있을 경우)하여 피크전력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전력수요관리 정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단지 내 비상발전기 의무가동(2~3시간)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외부계단 및 아파트 동간 연결브릿지(10개소)는 지붕이 없는 OPEN형이며 비, 눈이 내리면 미끄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감재 및 실내환경]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욕실장, 주방가구, 신발장 후면·하부 등 비노출 부위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ABS 환기구(상, 하)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 시 수도동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실 내 붙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구 등 구입 시에는 입주자사전방문기간을 이용하여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위(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는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피난기구(완강기)가 설치되고, 그 외 세대는 인접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하거나 전달될 수 있습니다.(비상탈출구 경량벽체에는 탈출에 방해되는 물건적치를 엄금함)
- 세대 내에는 가스레인은 설치되지 않으며 전기쿡탑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발코니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실 별도 설치되었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온·냉수분배기,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욕실은 시스템 욕실로 시공되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렛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세대통합관리반(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신발장 옆 경량벽체에 매립설치 되며, 급수 계량기함은 복도 PD에 설치되었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만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815m입니다.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급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 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청각장애인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시각경보기	세대 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편의시설 신청 기간 : 계약 체결 기간 내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 및 단지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 신청에 따른 설치공사로 인하여 입주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갑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 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 관련 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바이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법안전 콘텐츠	★★	
	화재·소방 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지붕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구분	적용 여부
바닥(층간바닥)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스마트홈 생활정보기)	적용
고효율LED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정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지방세정 자료

		<p>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p> <p>-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p>	
	자동차	<p>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p>	<p>-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p> <p>- 지방세정 시가표준액</p> <p>- 국토부 차적정보</p>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p>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p>	<p>-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p> <p>- 직권조사 등록</p>
	선박·항공기	<p>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p> <p>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p>	<p>- 지방세정 자료</p>
	입목재산	<p>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p>	<p>- 지방세정 자료</p>
	회원권	<p>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p>	<p>- 지방세정 자료</p>
	조합원입주권	<p>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p>	<p>- 지방세정 자료</p>
	어업권	<p>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p>	<p>- 지방세정 자료</p>
	분양권	<p>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p>	<p>-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p>
	금융자산	<p>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p> <p>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p>	<p>- 금융정보 조회결과</p>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p>금융기관 대출금</p>	<p>- 금융정보 조회결과</p>
		<p>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p>	
		<p>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p>	
		<p>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p>	<p>-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p>
		<p>임대보증금</p>	
		<p>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p>	
	<p>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p>		
	자동차	<p>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p>	<p>-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p> <p>- 지방세정 시가표준액</p> <p>- 국토부 차적정보</p>

14.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양산사송 A-4BL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보건설(주) 동부건설(주) (주)서우건설산업 삼광전기(주) 대한정보통신(주) 대연정보통신(주) (합)세운소방전기	-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바탕건축사사무소 (주)지화기술단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팸플릿 배부처	LH경남지역본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1670-0003
접수처	LH경남지역본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1층 주택홍보관 * 현장접수 장소인 LH경남지역본부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약도	
■ 대중교통(버스) - 100, 152, 156, 212번 등 (롯데아파트 하차)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갑질 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